이사회 규정

주식회사 **GS**

제 1 장 총 칙

제 1 조 (목적)

이 규정은 주식회사 GS 이사회(이하 '이사회'라고만 한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조 (적용범위)

이사회에 관한 사항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 이외에는 이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 3 조 (권한)

① 이사회는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및 본 규정 제12조에 열거된 업무집행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② 본 규정에서 이사회의 부의사항으로 정하여지지 아니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은 대표이사에게 위임한 것으로 한다.

③ 이사회는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감독한다.

제 2 장 구 성

제 4 조 (구성)

이사회는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

제 5 조 (의장)

① 이사회의 의장은 대표이사 회장으로 한다.

② 이사회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의장의 직무를 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 사장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 3 장 회 의

제 6 조 (종류)

① 이사회는 정기이사회와 임시이사회로 한다.

② 정기이사회는 분기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③ 임시이사회는 필요에 따라 수시로 개최한다.

제 7 조 (소집권자)

① 이사회는 의장이 소집한다. 그러나, 의장이 유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5조 제2항에 정한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각 이사는 의장에게 의안과 그 사유를 밝히어 이사회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의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이사회 소집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소집을 청구한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 8 조 (소집절차)

① 이사회를 소집함에는 회일을 정하고 적어도 정기이사회는 1주일 전, 임시이사회는 12시간 전에 각 이사에게 문서 또는 구두로 통고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제1항의 절차 없이 언제든지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제 9 조 (의사의 진행)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회의 의사를 진행하고, 회의의 질서를 유지하며, 특정의 이사를 지정하여 의사의 진행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0 조 (결의방법)

① 이사회의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 과반수로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 (회사의 기회 및 자산의 유용 금지) 및 제398조 (이사 등과 회사 간의 거래)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 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의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이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③ 제2항의 결정에 의하여 행사할 수 없는 의결권의 수는 출석한 이사의 의결권의 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④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제 11 조 (관계인의 의견청취)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에는 관계임직원 또는 외부인사를 출석시켜 안건에 대한 설명이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 12 조 (부의사항)

①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주주총회에 관한 사항

(1) 주주총회의 소집

(2) 전자적 방법에 의한 의결권의 행사 허용
(3) 영업보고서의 승인
(4) 재무제표의 승인
(5) 정관의 변경
(6) 자본의 감소
(7) 회사의 포괄적 주식교환·이전, 해산, 합병, 분할·분할합병, 회사의 계속 등
(8) 회사의 영업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및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의 양수 또는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의 영업 일부의 양수
(9)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위임, 타인과 영업의 손익 전부를 같이하는 계약, 기타 이에 준할 계약의 체결이나 변경 또는 해약
(10) 이사의 선임 및 해임
(11) 주식의 액면미달발행
(12)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의 면제
(13) 이익배당의 결정
(1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5) 이사의 보수
(16) 상법에 의한 회사의 최대주주(그의 특수관계인을 포함) 및 특수관계인과의 거래의 승인 및 주주총회에의 보고
(17) 공정거래법상의 대규모 내부거래
(18) 명의개서 대리인의 지정
(19) 주주명부 폐쇄 및 기준일의 결정
(20) 법정준비금의 감액
(21) 기타 주주총회에 부의할 의안

2. 경영에 관한 사항
(1) 회사경영의 기본방침의 결정 및 변경
(2) 전략적 사업방향
(3) 당년도 업적 및 차년도 사업계획
(4) 신규사업 또는 신제품의 개발
(5) 자금계획 및 예산운용
(6)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7) 임원에 관한 인사 및 보수
(8) 공동대표의 결정
(9) 이사회 내 위원회의 설치, 운영 및 폐지
(10)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11) 이사회 내 위원회(감사위원회 제외)의 결의사항에 대한 재결의
(12) 이사회 내 위원회 운영규정의 제정 및 개·폐

(13) 이사의 전문가 조력의 결정
(14) 지배인의 선임 및 해임
(15) 준법지원인의 선임 및 해임, 준법통제기준의 제·개정 및 폐지 등
(16) 중요한 사규, 사칙의 규정 및 개폐
(17) 지점의 설치·이전 또는 폐지
(18) 간이합병, 간이분할합병, 소규모합병 및 소규모분할합병의 결정
(19) 흡수합병 또는 신설합병의 보고
(20) ESG관련 주요사항

3. 재무에 관한 사항
(1) [별표1] 기재의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투자, 출자, 자산의 취득·처분, 자금의 차입 및 담보제공 또는 보증
(2) 결손의 처분
(3) 신주의 발행
(4) 사채의 모집
(5) 준비금의 자본전입
(6) 전환사채의 발행
(7)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8) 신주인수권의 양도성의 결정
(9) 자산재평가
(10) 자기주식의 취득 및 처분
(11) 자기주식의 소각

4. 이사에 관한 사항
(1) 이사와 회사간 거래의 승인
(2) 이사의 회사기회 이용에 대한 승인
(3) 이사의 경업승인 및 개입권의 행사

5. 기 타
(1) 중요한 소송의 제기, 화해, 취하 및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2)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의 취소
(3) 기타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사항, 주주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및 대표이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이사회에 보고할 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이사회 내 위원회에 위임한 사항의 처리결과
2. 이사가 법령 또는 정관에 위반한 행위를 하거나 그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감사위원회가 인정한 사항
3. 내부회계관리제도의 운영실태
4. 기타 경영상 중요한 업무집행에 관한 사항

제 13 조 (이사회 내 위원회)

① 이사회는 이사회 결의로써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하의 위원회를 둘 수 있다.

1. 감사위원회
2.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3. ESG위원회
4. 기타 이사회의 결의로써 그 설치를 결정한 위원회

② 이사회는 다음 각호를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에서 정하는 사항

③ 각 위원회는 2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단,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하되 사외이사가 총위원의 3분의 2 이상이 되도록 하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의 2분의 1 이상은 사외이사가 되도록 한다.

④ 위원회의 세부운영에 관한 사항은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다.

제 14 조 (위임)

이사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할 사항 중 법령 또는 정관에 정하여진 것을 제외하고는 이사회의 결의로써 일정한 범위를 정하여 대표이사에게 그 결정을 위임할 수 있다.

제 15 조 (의사록)

① 이사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과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③ 의사록은 본점에 비치한다.

제 16 조 (사무국)

이사회의 사무를 담당하게 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둘 수 있으며, 사무국은 의장의 지시에 따라 소집통지, 부의안건의 정리 및 배포, 이사회 의사록 작성 및 부의안건의 사후관리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부 칙 (2004.7.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4년 7월 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9. 2. 2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09년 2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19. 3. 7)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19년 3월 7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1. 3. 12)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1년 3월 12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3. 3. 10)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3년 3월 10일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24. 3. 28)

제1조 (시행일)
이 규정은 2024년 3월 28일로부터 시행한다.

[별표1]

구분	이사회부의기준
시설투자 (신규 및 증설 투자)	件당 총투자금액이 자기자본의 1% 이상
출자 및 타회사 주식의 취득 및 처분	件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 이상
자산의 취득·처분 및 영업의 일부양도	件당 금액이 자기자본의 1% 이상
자금의 차입 (한도거래외 일반차입)	차입 件당 자기자본의 1% 이상의 장기차입금
타인을 위한 담보제공 및 보증	件당 자기자본의 1% 이상